

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☐ 자동차대여사업 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				상속신고서 처리기간 5 일	
신고인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	
	③ 주 소	(전화:)			
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		(운행형태:)			
⑤ 피상속인과의 관계	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5조·제35조·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·제71조·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· 도 지 사 귀하					
첨 부 서 류					수수료
					3,000원
1.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					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